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1379

발의년월일 : 2020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종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병도, 김화숙, 김제리, 고병국,
정재웅, 신정호, 이경선, 성흠제,
이영실, 김평남, 박기재, 이호대,
김경우, 임종국, 이태성, 김경영,
김호진, 정진술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거주지의 재개발,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- 따라서,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'1개월'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개월”을 각각 “1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금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
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
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
지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⑤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(복지 및 생업지원) 제3항, 제4항의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을 1개월로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의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개월 지급분 추가 비용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제3조제1항제2호)

-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전입자에 대한 별도의 현황이 없어 비용추계 곤란
 - 단,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개시 사유는 전입 뿐 아니라 65세 도래나 소득·재산변동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, 차상위계층 해당(생활보조수당에 한함)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고 전입으로 인한 신규지급대상 인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